삼정 KPIMG

Deal Advisory 서비스라인 교육 (M&A)

# M&A 관련 Tax의 이해

삼정KPMG Deal Advisory Internal use Only

# 삼정 KPIMG

# Contents

		Page
ı.	M&A Tax 교육 개요	3
H.	M&A 거래에 대한 세법상 관점	4
III.	M&A 거래유형별 과세체계	7
	1. 양수도 거래의 과세체계	8
	2. 합병 거래의 과세체계	15
IV.	M&A 거래 관련 주요 실무 사례	19
V.	M&A 세무자문시 유의할 사항	25

# I. M&A Tax 교육 개요

- M&A 거래에 대한 세법상 관점을 이해하고,
- □ 각 M&A 거래유형별 법령상 규정과 과세체계 내용을 살펴보며,
- □ 실제 사례를 통해 M&A 거래와 관련한 주요 이슈사항을 살펴보면서,
- M&A Tax에 대한 실무적 이해를 제고하는 한편,
- 마지막으로 M&A 세무자문시 유의해야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П. M&A거래에 대한 세법상 관점

#### □ 세법상 M&A란?

- "M&A"란 <u>기업을 합병(Mergers)하거나 인수(Acquisitions)하는 것으로 지분(주식</u> 또는 출자금등) 또는 자산·부채의 이전이 발생하는 "거래"를 수반함
  - ☞ '세법'에서는 이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더불어 "거래대금" 및 "취득" 등에 대해 세금을 과세 또는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관련 규정>

구분	관련 세법규정	대상
" <b>소득</b> "에 대해 과세규정	법인세, 소득세	양도자
" <b>거래</b> "에 대한 과세규정	증권거래세, 부가가치세	양도자
" <b>취득</b> " 및 " <b>등기</b> "에 대한 과세규정	지방세법상 취득세 등	양수자

# П. M&A거래에 대한 세법상 관점

#### ■ 모든 M&A 거래가 과세되는지?

• 그 M&A 거래가 사실상 "기업의 연속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형식적인 재편"이거나 "정책적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세특례 제도를 구비하여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M&A 거래에 대해 과세 대상 세금을 과세이연, 감면 또는 면제하여 주고 있음

<M&A 관련 조세특례 제도의 예시>

- 「법인세법」상 조세특례 제도 :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구조조정[합병, 분할(인적분할 및 물적분할), 현물출자등]에 대해 법인세 과세이연 규정(법인세법§44~47의2 등)
-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특례 제도 : 지주회사 설립 또는 전환을 지원하는 특례 제도, 원샷법 등(조세특례제한법§38, 38의2 등)
- 「지방세법」및「지방세특례제한법」상 조세특례 제도 :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구조조정에 대해 지방세 경감

# П. M&A거래에 대한 세법상 관점

- □ 기업인수를 위한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소개
- M&A로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합병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여되는 조세특례 제도를 예시적으로 열거하면 아래와 같으며, M&A 고려시 여러 특례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 필요

#### 기술혁신형 합병 세액공제

(조특법§12의3)

- <u>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u> (이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을 합병하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인수한 기술가치 금액의 10%만큼 세액공제 혜택 부여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조특법§12의4)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의 주식**을 **인수**하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인수한 기술가치 금액의 10%만큼 세액공제 혜택 부여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출자·인수 세액공제

(조특법§13의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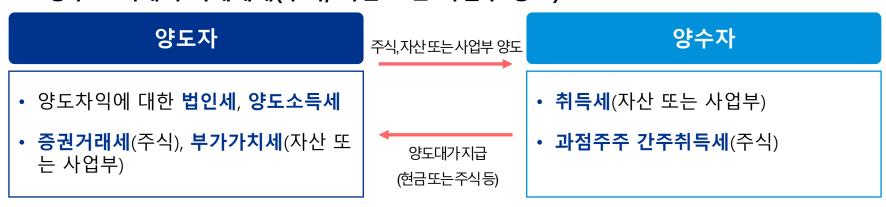
- <u>소재·부품·장비 전문 중소중견기업 등(내국법인)의 주식</u>을 <u>증자</u>하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 <u>소재·부품·장비 전문 외국기업 등의 주식</u>을 <u>인수</u>하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주식 등 취득금액의 5%만큼 세액공제 혜택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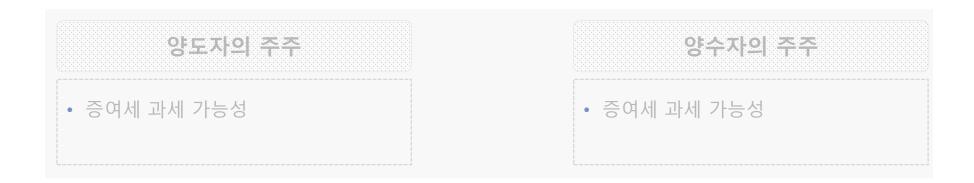
# Ⅲ. M&A 거래유형별 과세체계

- M&A 거래시 세무상 검토대상
  - M&A 거래 관련 이해관계자의 범위
    - ✓ 거래당사자(예: 주식양도자, 주식양수자)
    - ✓ 거래당사자의 주주(예: 합병법인의 주주, 피합병법인의 주주)
  - ・ M&A 거래 관련 이해관계자별 검토 대상 세법 → 부담하여야 하는 세금 항목 및 규모
  - M&A 거래 당사자간의 특수관계 여부 → 세법상 "시가" 해당 여부
  - M&A 거래시 적용 가능한 조세특례 범위

# Ⅲ. M&A 거래유형별 과세체계

□ 양수도 거래의 과세체계(주식, 자산 또는 사업부 양도)





# 皿. M&A 거래유형별 과세체계

- □ 과세대상 양도소득이란?(개인주주 기준)
  - 양도소득의 범위 및 과세 방식
    -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소득세 기본세율에 따라 과세
    - 주식: 대주주 여부에 따라 과세 차이 발생

구분	장내 거래	장외 거래
대주주[1]	과세 : 20% 세율(과표 3억원 초과분 : 25%)	과세 : 20% 세율(과표 3억원 초과분 : 25%)
대주주 이외	비과세[2]	과세(20%, 중소기업 주식 10%)

- [1] 대주주란 지분율 1% 이상(코스닥 2%, 코넥스 4%)이면서,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주주를 의미함
- [2] 2023년부터는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도 상장주식 거래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질 예정임

# 皿. M&A 거래유형별 과세체계

#### □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및 증여세 과세제도

-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
  - 특수관계 있는 자(법인 및 개인 포함) 간의 거래시 자산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매각 또는 매수하는 경우 시가와 매매가격 과의 차이에 대해 추가로 과세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세 규정
  - 지배주주와 그 친족등이 30% 이상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하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매각 또는 매수하는 경우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 중 지배주주등의 지분 해당액에 대해 추가로 과세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상속세및증여세법)

# Ⅲ. M&A 거래유형별 과세체계

#### □ 세법상 시가란?

- 세법상 시가의 적용
  - 특수관계 없는 불특정다수인 간 거래한 사례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해당
    매매사례가액을 통상 시가로 보며 대표적으로 <u>주권상장법인 주식</u>의 경우 <u>거래일의</u>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함
  -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을 순서대로 적용함
    - 1)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
    - 2)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보충적으로 평가한 가액
- 공정가치평가방법(DCF평가방법 등)으로 평가한 가액은 통상 세법상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함
  - 통상 특수관계 있는 자 간에 주식 또는 사업부문을 양수도하는 경우 경영진의 배임 이슈
    등을 고려하여 공정가치평가가격으로 거래해야 하는 상황이 존재함
  - 현행 각 세법 규정 및 과세당국의 입장은 공정가치평가가격으로 거래한 것에 대해 세법상
    "시가"로 인정한 것은 매우 제한적임
  -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개정시도가 있으나 아직 과세당국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추후 이러한 과세당국의 입장이 변경되는지 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 ш. M&A 거래유형별 과세체계

- □ 법인세법상 최대주주 할증 규정의 개정
- 2021년 초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권상장법인 주식 관련 할증 규정 명확화
  - 2021년 이전에는 시간외대량 매매(소위 "블록딜")을 **장내 거래**로 보아 **거래일 종가**로 거래하는 경우 별도의 최대주주 할증(20%) 적용 없이 법인세법상 "시가"로 보았고, 일반적인 장외 거래의 경우 최대주주 할증에 대해 불분명한 점이 있어 논란이 되어 왔음
  - 2021년 세법 개정 이후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sup>[1]</sup>에** 대해서는 무조건 할증(20%) 적용
- [1]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2) 최대주주등 간의 거래에서 지분율이 1% 이상 변동되는 경우를 의미함

#### ■ 기존의 상속·증여 Plan의 변경 필요

- 최근 시간외대량매매 거래시 할증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일부 기업에서 대주주가 자녀에게 시간외대량매매로 주식을 할증 적용 없이 종가로 취득하게 하는 등의 증여 Plan을 고려 또는 실행한 바 있음
- 현재 시점에는 최대주주간 지분이전시 할증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기존 방안을 고려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시사점

## Quiz #1

- □ M&A Tax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른 것을 고르십시오.
  - [1] 주식 양수도 거래시 검토 대상 이해관계자는 주식의 양도자와 양수자 뿐이다.
  - [2] 법인세법등에 의해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양도자 또는 양수자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 [3] 대주주가 장내에서 상장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 [4] DCF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거래가격은 법인세법 내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시 DCF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면 세무상 위험은 발생하지 않는다.

# Quiz #1 - 정답

- □ 파란색으로 표시한 항목들이 모두 M&A Tax와 관련하여 적절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 [1] 주식 양수도 거래시 검토 대상 이해관계자는 주식의 양도자와 양수자 뿐이다(경우에 따라 주식의 양도자 및 양수자의 주주도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음).
- 정답 [2] 법인세법등에 의해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양도자 또는 양수자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 [3] 대주주가 장내에서 상장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대주주가 장내에서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 [4] DCF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거래가격은 법인세법 내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시 DCF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면 세무상 위험은 발생하지 않는다(DCF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거래가격은 세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세무상 위험을 고려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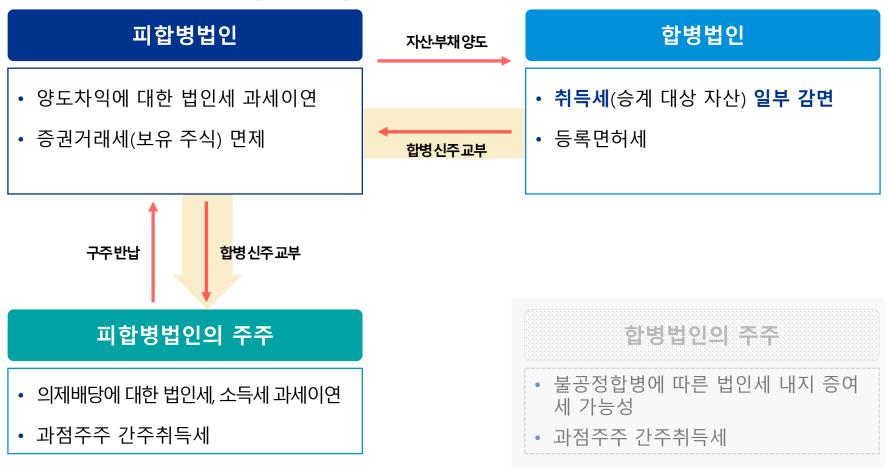
# Ⅲ. M&A 거래유형별 과세체계

#### □ 합병 거래의 과세체계



# Ⅲ. M&A 거래유형별 과세체계

#### □ 합병 거래의 과세체계(<u>적격합병</u>)



# Ш. M&A 거래유형별 과세체계

#### □ 적격합병이란?

• 아래 나열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합병을 "적격합병"이라 함

항목	내용
사업영위기간 요건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간의 합병
	1) 합병대가 중 주식 등의 가액이 80% 이상
지분의 연속성 요건	2) 지배주주등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합병대가 교부
	3) 지배주주등이 합병법인주식등을 계속 보유할 것
사업의 계속성 요건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계속할 것
고용 승계 요건	근로자 80% 이상 고용 승계 및 유지될 것

- 100% 모·자회사간 합병 또는 100% 자회사간의 합병시 요건 불필요
- 적격합병시 고려사항
  - 합병 이후 요건 유지를 위해 관리가 필요함 : 승계한 근로자의 근속 유지, 자기주식 처분시
    요건 위배 여부 확인 등
  - 합병 이후 적절한 세무처리를 위해 별도 관리가 필요함: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구분경리, 승계한 개별자산별 관리(처분, 대체) 등

# Ш. M&A 거래유형별 과세체계

#### □ 합병 거래시 "시가"란?

-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 또는 증여세 규정
  -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주주등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에 대해 추가로 과세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법인세법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 주권상장법인의 합병은 자본시장법에 합병의 방법이 규정되어 있어 불공정합병으로 보지 아니함
  - 주권상장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 4에 따라 합병하여야 하며 해당 법률에 따른 가격으로 합병비율을 산정하여야 함
  - 이 경우,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가격대로 합병을 진행하여야 하므로 세법에서는 이와 관련한 합병 거래시 불공정합병으로 간주하지 아니함
- 비상장법인 간의 합병시 세무상 이슈를 고려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합병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 ※ 단, 합병당사법인의 세무조사 과정등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등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의 평가 가액에 영향을 미쳐 불공정합병으로 인한 세무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음

- M&A거래시 사전 Planning의 중요성
- M&A는 고도의 전문적인 의사결정이므로 거래시 수반되는 비용 중 하나인 세부담 규모에 대해 사전 검토가 반드시 필요
- 특히,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M&A의 경우 Tax Planning에 따른 불확실성(납세자와 과세당국간의 근본적인 시각차이 또는 명확하지 않은 세법 규정, 일관되지 않은 세무행정)이 항상 내재되어 있으므로 M&A를 고려하는 시점부터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

#### 납세자

- 경제적으로 동일한 결과라면 "**가급적** 세금유출이 적은 거래구조"를 선택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
- ※ 조세를 적극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거래구조를 선택하는 경우도 존재



#### 과세당국

- -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래구조를 재구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

- □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의 합병
  - 2002년 12월 하나은행과 서울은행 간의 합병 사례
    -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6조1,300억원인 서울은행을 합병법인으로 하는 역(逆)합병(합병 이후 사명을 "하나은행"으로 변경)
    - 합병 이후 하나은행은 3조6,000억원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약 9,500억원의 세금을 절감함
    - 이후 '국세청'에서 두 은행간 합병을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부당한 합병으로 보아
      이월결손금 공제분에 대해 과세예고 통지
    - 사전적 장치로 국세청에 질의하였으나 불분명한 사실관계에 기인한 구속력 없는 회신이었음
  - ☞ '재정경제부'에서 본 합병에 대해 부당한 역합병이라는 유권해석 생산하여 과세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었으나 이후 국세청에서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하였음

#### 시사점

- 부실한 사전검토로 인해 은행의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례
  - **부실한 사전검토**: 합병 이후 **사명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사전 분석 미비
  - **대비책 마련 미비**: 국세청 유권해석 획득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고 그나마 기재한 부분도 실제와 다른 사실관계에 기인한 해석이어서 구속력이 없는 해석이었음

- □ 합병시 포합주식 이슈
  - 통상 합병시 적격합병 요건에 대해 고려되는 주요 이슈대상은 합병포합주식[1] 이슈임
    - 합병 전에 미리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을 금전 매매하여 요건을 우회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의 규제임(피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시 지급할 현금을 사전에 지급하여 현금교부합병 이슈 회피 가능)
    - 합병법인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규제 대상
    - ※ 단, 완전 모·자회사간 합병시 합병포합주식 이슈는 적용되지 않음
- [1] 법인세법상 "합병포합주식"이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으로 합병포합주식에 대응되는 합병신주는 합병대가 산정시 현금으로 간주됨
  - 미래에셋증권-KDB대우증권 합병 사례
    - '미래에셋증권'은 합병 전 2년 이내 취득한 'KDB대우증권'의 주식 43%를 보유하고 있었음
    - 미래에셋증권을 합병법인으로 하는 경우 합병포합주식 이슈로 1,000억원대의 세금 예상
    - 해당 이슈를 회피하기 위해 KDB대우증권을 합병법인으로 하는 역(逆)합병을 진행하였음
    - 이러한 역합병 진행과 관련하여 언론 등에서는 탈세 논란을 재조명하였으나 현재까지
      과세로 이어지진 아니하였음
  - ☞ 여전히 합병포합주식 이슈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역합병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으나 탈세 논란 등을 고려할 때 조심스러운 접근 필요

#### 실무 사례

#### □ 유증자합병 이슈 소개

- 100% 모·자회사간 합병시 통상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으로 진행되나, 일부 자기주식 활용 목적으로 합병신주를 발행하는 경우가 존재함
  - '**무증자합병**'의 경우 기존 자회사 주식이 소멸함에 따라 세무상으로 별도 손익을 인식하지 않음
  - '유증자합병'의 경우 기존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이 그대로 자기주식으로 대체되고 해당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손익을 인식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동일한 합병임에도 합병신주를 발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처분손실을 인식할 수 있는 지 여부가 달라지므로 언론에서 "신종절세전략"이라는 비판적인 기사를 생산함
  - 과세당국에서는 해당 자기주식처분손실을 부인하려는 시도가 몇 차례 있었으나, 현재까지는 납세자가 모두 승소하였음

#### 시사점

#### • 현재 진행중인 이슈사항임

- 현재까지 참고할 수 있는 사건은 비상장회사 관련하여 명확히 공정한 합병비율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였고 이후 과세당국에서 달리 판단할 가능성 존재
- 현재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주제이고 이와 관련하여 낙관적인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함

## Quiz #2

- □ 합병 과세체계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른 것을 고르십시오.
  - [1] 피합병법인의 주주 중 개인 주주는 합병으로 취득하는 합병신주의 시가와 기존주식의 장부가액의 차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2] 주권상장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방법에 따라 합병비율을 산정하여야 한다.
  - [3]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격합병을 통해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모든 조세의 면제가 가능하다.
  - [4] 합병포합주식이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을 말한다.

# Quiz #2 - 정답

- □ 파란색으로 표시한 항목들이 모두 합병 과세체계와 관련하여 적절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 [1] 피합병법인의 주주 중 개인 주주는 합병으로 취득하는 합병신주의 시가와 기존주식의 장부가액의 차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피합병법인의 주주는 합병으로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함).
  - [2] 주권상장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방법에 따라 합병비율을 산정하여야 한다(주권상장법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합병비율로 합병하여야 함).
  - [3]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격합병을 통해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모든 조세의 면제가 가능하다(일부 조세(취득세)는 일부 감면만 적용됨).
- 정답 [4] 합병포합주식이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을 말한다.

# V. M&A 세무자문시 유의할 사항

- □ 최신 규정에 대한 확인, M&A 이후 예정거래에 대한 확인 및 조세회피를 위한 M&A로 간주될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조세특례제도와 관련하여서는 반드시 최신의 규정을 근거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조세특례 제도의 경우 매년 세법규정 등으로 근본적인 과세체계가 변경되기도 하며 현행 규정의 적용시기 등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함
    - 특정기한까지 적용되는 일몰 규정의 경우 M&A거래 시점시 일몰기한이 경과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M&A와 관련한 사실관계뿐 아니라 M&A 이후 예정된 거래도 반드시 확인해야 함
    - M&A 조세특례 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M&A 시점에 충족해야하는 사항들 뿐 아니라 M&A 거래 이후에도 일정 기간동안 요건을 유지해야하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 M&A 거래 이전부터 계획하고 있는 후속 거래가 있다면 해당 후속거래로 인한 M&A 조세특례 유지 가능성에 대해 고객에게 사전 안내해야 함
  - 세금 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별도의 구조를 고려하는 경우 실질과세로 인한 과세가능성을 항상 고려하여야 함
    - 고객은 항상 세금 부담을 절감하고자 하므로 일반적인 구조와 다르게 인수구조를 설계하는 경우 조세회피를 위한 M&A로 간주될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함

삼정 *KPMG* 

# Thank you



#### kpmg.com/kr



kpmg.com/socialmedia



kpmg.com/app

Internal use only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1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